

상속재산분할협의서

피상속인 _____이(가) 20____년 ____월 ____일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, 공동상속인 _____은
(는)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다.

1. 피상속인

성명	_____	생년월일	20____년 ____월 ____일
사망일	20____년 ____월 ____일	최후 주소	_____

2. 공동상속인

No	성명	관계	생년월일	주소

3. 상속재산과 분할 내용

No	재산 표시	취득할 상속인	지분·금액

4. 그 밖의 합의

5. 공통 사항

1. 위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2. 상속인들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상속등기, 명의변경, 예금 해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지체 없이 서로 내주는 등 절차에 협력한다.
3. 상속인 전원은 이 협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였다.

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한다.

20____년 ____월 ____일

관 계	상속인 성명	서 명	인감 날인

※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이 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)를 냅니다. 협의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하고, 미성년 상속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서명·날인합니다.